



유의사항

□ 확인대상

- 건조·제조·정비 확인대상 품목(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60조의4제1항을 참조하십시오)

□ 지정대상물건에 표시해야 할 사항(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

- 지정사업장의 명칭,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
- 지정 품명·형식 및 규격(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)
- 건조일자·제조일자 또는 정비일자
- 건조번호·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

처리절차

